

서울특별시 서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477호)

○ 2026. 3. 27.
○ 재정건설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3. 13. 오지환 의원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6.

다. 상 정 일 자 : 2026. 3. 27.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지환 의원)

-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식관리 지원 체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해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민희)

1. 개정조례안의 제출 경위

○ 2008. 3.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8943호) 제 21조가 제정되면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초구는 2013. 6. 1.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사업 추진개요>

- 사업명 :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2024.01.01.~2026.12.31.(3년)
- 인력현황 : 총10명(센터장1, 팀장1, 팀원8)
- 위탁사무 : 등급별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 민간위탁금액 : 550,000천원 (국비20%, 시비40%, 구비40%)

<2025년도 기준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 기관수	일반회원		기본회원		총 회원수	
		(등록관리 대상)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어린이집	158	145	5,100	13	1,528	158	6,628
유치원	9	6	393	3	462	9	855
아동복지시설	17	17	380	-	-	17	380
총계	184	168	5,873	16	1,990	184	7,863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 12. 기준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의 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12,995개소이며, 이 중 78.8%에 해당하는 10,238개소가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위생과 영양 관리가 취약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음.
-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춰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 7. 28.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제정)이 시행 중에 있음.
-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서초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49개소로 이 중 노인복지시설이 23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26개소이며, 2026. 3. 10.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제·개정하여 운영 중인 자치구는 17개 자치구(강남, 강동, 강서, 광진, 금천, 마포, 성동, 성북, 영등

포, 중랑, 강북, 노원, 도봉, 구로, 양천, 송파, 은평)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025년도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총계	노인복지시설(23)				장애인복지시설(26)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49	5	6	10	2	11	11	4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전임.

2. 주요 개정사항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완료하고자 함(『'25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국비지원 수요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44, 2024. 1. 15. 및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1536, 2024. 1. 16.)).

- 이에 우리 구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목표에 따라 금년에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설치를 완료하여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것임.

3. 조문별 검토내용

▣ 제명 변경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 조문 개정(안 제1조, 제4조, 제7조)

-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및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및 통합 운영됨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개정하고, 안 제7조의 사무 위탁의 범위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추가하였음.

▣ 조문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5조제3호)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5조제3호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음.

4. 조례 개정에 따른 추진계획

- 현재 우리 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간(2024. 1. 1.~2026. 12. 31.) 서초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 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으로 실시할 예정임. 다만,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재위탁 시에는 위탁내용 및 사무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82호, 2022. 11. 25. 발령·시행)에 따른 업무 범위¹⁾ 이외에도 어린이의 성장기, 연령층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1) 제3조(업무범위)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2.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이용자별 영양관리 지도(영양관리카드 관리), 대상별 교육(이용자, 조리원, 종사자, 시설장), 정보제공(식단제공, 식생활정보 제공, 소식지) 등의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급식소 관련 특화사업>

지역(자치구)	프로그램 명칭	주요 내용
서울 송파구	영양 가득 원데이클래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요리실습
경기 의왕시	의왕미식회/나 길들이기	조리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어르신 맞춤형 식단 가이드 제공
경기 안산시	찾아가는 실버 영양교실	어르신들의 저작(씹는)능력에 맞춘 단계별 식단 교육 및 인지 활동 결합 프로그램
충남 당진시	안심급식소 인증제	위생영양 수준이 우수한 시설을 '안심급식소'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및 홍보 지원
전남 나주시	협력형 급식 지원 모델	소규모 시설 간 협업을 통해 식단을 공동 대응하는 체계 구축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6.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종합의견

-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시설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따라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및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함께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2027년에는 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때 위탁내용 및 사무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시비 및 자체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